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330
------------	------

2023. 12. 18.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0. 13. 최재란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2023. 10. 23.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2023. 12. 18.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최재란 의원)

1. 제안이유

-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 인구는 나날이 증가세에 있고,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2014년에 마련된 필수공동시설 중 경로당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 상황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 또한, 최근 2,000세대 이상 대단지 공동주택을 다수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필수공동시설 면적 기준은 1,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세대 수에 따라 필수공동시설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로당의 세대규모별 면적기준을 상향하고, 각 필수시설마다 2,000세대 이상 규모에서 적용하는 면적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1).

Ⅲ. 검토보고 요지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가. 발의 배경

- 이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주택 세대 수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필수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23년 10월 13일 최재란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주민공동시설”¹⁾이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리시설²⁾로서,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³⁾(총량)을 설치해야 하며, 지역 특성 및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관(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 너. (생략) (검토보고서 붙임1 참고)

2) 「주택법」 제2조(정의)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3)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서울시 조례로 이를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음.

- 또한, 세대수에 따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제3항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기준은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14년부터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총량)보다 4분의 1을 강화하여 적용해왔고⁵⁾, 현재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세대규모별 면적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다함께돌봄시설은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4)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5)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별표 1] :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 기준 >

필수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당	- 150 ~ 300세대 미만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300 ~ 500세대 미만 : 155㎡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225㎡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375㎡이상
	- 1,500세대 이상 : 500㎡이상
어린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세대 이상 : 725㎡이상
작은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
	- 1,500세대 이상 : 298㎡이상

나. 개정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공동주택 단지내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로당”의 경우 1,500세대 이상에서는 일률적 면적기준을 적용해 오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00세대 이상의 경우 세대수 증가에 따른 연동기준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별표 1]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별표 1]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현행		개정안	
필수 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필수 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 당	- 150 ~ 300세대 미만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경로 당	- 150 ~ 300세대 미만 : 99㎡이상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725㎡이상 - 2,000세대 이상 : 725㎡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2㎡를 더한 면적 이상
	- 300 ~ 500세대 미만 : 155㎡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225㎡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375㎡이상		
	- 1,500세대 이상 : 500㎡이상		
어린 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어린 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725㎡이상 - 2,000세대 이상 : 725㎡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2㎡를 더한 면적 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세대 이상 : 725㎡이상		
작은 도서 관	-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	작은 도서 관	-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298㎡이상 - 2,000세대 이상 : 298㎡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		
	- 1,500세대 이상 : 298㎡이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이와 동시에 2,000세대 미만의 경우에도 경로당의 최소면적 기준을 어린이집 수준으로 확대 추진하되, 그 밖에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의 경우 2,0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연동기준을 신규 도입하기 위한 것임.

○ 이는 현행 기준이 마련된 2014년에 비해 현재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약 36.3%(121만명→165만명)⁶⁾ 증가하였고, 향후 2030년에는 그 수치가 22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6)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 - 서울특별시 65세 이상 인구(2014년 - 1,216,529, 2022년 - 1,658,207명), 서울특별시 0~6세 인구(2022년 - 345,083명)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최근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1,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⁷⁾이 통합단지를 지향하는 추세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검토보고서 붙임3 참고), 대규모 단지에 필요한 필수시설의 확보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정안에 따라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기존 1,500세대 이상의 면적기준에 초과하는 세대당 “경로당”, “어린이집”의 경우 0.2m², “작은도서관”의 경우 0.1m²를 각각 더한 면적을 적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현행 세대당 면적 증가량 중 최소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개정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등을 통해 증가율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음.

< 세대규모별 면적기준에 따른 세대 당 구간 면적 >

분 류	500~1,000세대	1,000~1,500세대	1,500~2,000세대	2,000세대 이상(안)
어린이집·경로당	330m ²	580m ²	725m ²	비례 증가
500세대 구간 면적(세대당)	330m ² (0.66m ²)	250m ² (0.5m ²)	145m ² (0.29m ²)	세대 당 0.2m ²
작은도서관	158m ²	203m ²	298m ²	비례 증가
500세대 구간 면적(세대당)	158m ² (0.32m ²)	45m ² (0.09m ²)	95m ² (0.19m ²)	세대 당 0.1m ²

- 또한, “경로당”의 경우 고령화 등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세대규모별 면적기준을 상향하고 있는데, 1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은 99m²로 하되⁸⁾, 그 이외의 수치는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

7) 압구정 3단지(5,800세대), 대치 미도(3,800세대)

8) 30평(99m²) 이하 규모에서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전문가들과

준으로 변경토록 하였음.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세대규모별 경로당의 면적기준 증가율이 27.7%에서 54.7%로 상이하여 개정 이후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일부 세대규모의 주택단지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바, 면적 기준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겠음.

< 경로당의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증가율 >

	기존 (A)	개정안 (B)	증가율 (B-A/A*100)
150세대 ~ 300세대 미만	50m ² 에 세대 당 0.1m ² 를 더한 면적	99m ²	-
300세대 ~ 500세대 미만	155m ²	198m ²	27.7%
500세대 ~ 1,000세대 미만	225m ²	330m ²	46.7%
1,000세대 ~ 1,500세대 미만	375m ²	580m ²	54.7%
1,500세대 ~ 2,000세대 미만	500m ²	725m ²	45%

다. 종합검토의견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 급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경로당 면적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필수 주민공동시설의 면적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2025년 초고령화 사회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개정의 시의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 다만, 일부 주택단지에서는 증가하는 면적기준이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세대규

현장 지도자들의 중론이 있음, ‘2016년 경로당 실태조사 현황’ - 2016.12. 대한노인회, “경로당 면적 99m² 이하가 72.4%…프로그램 진행 어렵다” - 백세시대(2016.9.9.)

모별 면적기준의 경우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바 없음을 감안할 때, 향후 충분한 연구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면적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서울시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주민공동시설을 법적 기준보다 초과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실 상태로 남아있는 필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로당·어린이집·작은도서관의 세대규모별 면적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필수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당	- 150 ~ 300세대 미만 : 99㎡이상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725㎡이상 - 2,000세대 이상 : 725㎡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2㎡를 더한 면적
어린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725㎡이상 - 2,000세대 이상 : 725㎡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2㎡를 더한 면적
작은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298㎡이상 - 2,000세대 이상 : 298㎡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1㎡를 더한 면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별표 1]</u>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필수 시설</th><th style="width: 90%;">세대규모별 면적기준</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경로 당</td><td>- 150 ~ 300세대 미만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td></tr> <tr> <td>- 300 ~ 500세대 미만 : 155㎡이상</td></tr> <tr> <td>- 500 ~ 1,000세대 미만 : 225㎡이상</td></tr> <tr> <td>- 1,000 ~ 1,500세대 미만 : 375㎡이상</td></tr> <tr> <td>- 1,500세대 이상 : 500㎡이상</td></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어린 이집</td><td>-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td></tr> <tr> <td>-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td></tr> <tr> <td>-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td></tr> <tr> <td>- 1,500세대 이상 : 725㎡이상</td></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작은 도서관</td><td>-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td></tr> <tr> <td>-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td></tr> <tr> <td>-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td></tr> <tr> <td>- 1,500세대 이상 : 298㎡이상</td></tr> <tr> <td>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td></tr> </tbody> </table> <u>[별표 1]</u>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필수 시설</th><th style="width: 90%;">세대규모별 면적기준</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경로 당</td><td>- 150 ~ 300세대 미만 : 99㎡이상</td></tr> <tr> <td>-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td></tr> <tr> <td>-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td></tr> <tr> <td>-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td></tr> <tr> <td>- 1,500 ~ 2,000세대 미만 : 725㎡이상</td></tr> <tr> <td>- 2,000세대 이상 : 725㎡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2㎡를 더한 면적 이상</td></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어린 이집</td><td>-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td></tr> <tr> <td>-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td></tr> <tr> <td>-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td></tr> <tr> <td>- 1,500 ~ 2,000세대 미만 : 725㎡이상</td></tr> <tr> <td>- 2,000세대 이상 : 725㎡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2㎡를 더한 면적 이상</td></tr>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작은 도서관</td><td>-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td></tr> <tr> <td>-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td></tr> <tr> <td>-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td></tr> <tr> <td>- 1,500 ~ 2,000세대 미만 : 298㎡이상</td></tr> <tr> <td>- 2,000세대 이상 : 298㎡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td></tr> <tr> <td>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td></tr> </tbody> </table>		필수 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 당	- 150 ~ 300세대 미만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300 ~ 500세대 미만 : 155㎡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225㎡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375㎡이상	- 1,500세대 이상 : 500㎡이상	어린 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세대 이상 : 725㎡이상	작은 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	- 1,500세대 이상 : 298㎡이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필수 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 당	- 150 ~ 300세대 미만 : 99㎡이상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725㎡이상	- 2,000세대 이상 : 725㎡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2㎡를 더한 면적 이상	어린 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725㎡이상	- 2,000세대 이상 : 725㎡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2㎡를 더한 면적 이상	작은 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298㎡이상	- 2,000세대 이상 : 298㎡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필수 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 당	- 150 ~ 300세대 미만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300 ~ 500세대 미만 : 155㎡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225㎡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375㎡이상																																									
	- 1,500세대 이상 : 500㎡이상																																									
어린 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세대 이상 : 725㎡이상																																									
작은 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																																									
	- 1,500세대 이상 : 298㎡이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필수 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 당	- 150 ~ 300세대 미만 : 99㎡이상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725㎡이상																																									
	- 2,000세대 이상 : 725㎡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2㎡를 더한 면적 이상																																									
어린 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725㎡이상																																									
	- 2,000세대 이상 : 725㎡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2㎡를 더한 면적 이상																																									
작은 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298㎡이상																																									
	- 2,000세대 이상 : 298㎡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